

업무분담지원금 사업주 확인서

아래 질의는 사업주 대상 장려금 또는 지원금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, 질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, 고용보험법 제1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사업장명 : _____ (*사업자등록번호: _____)

1. 육아기단축(또는 육아휴직)자의 성명, 육아기단축(또는 육아휴직)기간을 기술하세요.

- 성명 : _____
 ○ 육아기단축(또는 육아휴직) 기간 : _____ ~ _____
 ○ 1주간 단축한 근무시간 : _____ 시간

2. 육아기단축(또는 육아휴직)자의 육아기단축(또는 육아휴직) 종료 후, 원직 복직일은 언제인가요?

_____ 년 _____ 월 _____ 일

3. 육아기단축(또는 육아휴직)자, 업무분담자들 중 위 사업장 대표와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의 관계인 사람이 있습니까?

☐ 예 ☐ 아니오

4.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(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, 워라밸일자리장려금, 대체인력지원금 등)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했습니까?

☐ 예 ☐ 아니오

5. 육아기단축(또는 육아휴직)에 따른 ①대체인력 채용 또는 ②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하여 대체인력지원금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3호)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타 정부부처,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금(장려금)을 지급받은 경우 (또는 예정)에 해당합니까?

☐ 예 ☐ 아니오

6. 업무분담자들의 업무분담 조건에 대해 기술하세요.

연번	성명	분담업무	업무분담기간	월 업무분담수당액	업무분담자 서명

이상 기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사업장명 : _____ (인)

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안내

- ◆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 사업주는 행정적·사법적 제재를 받음

□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

-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(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) 및 1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<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>
- ② 최대 5배 추가징수 <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>
-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<고용보험법 제116조(벌칙)>,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<제347조(사기)>

《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사례 》

1.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

- ① 피보험자 자격.취득.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
예) 입사일·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 보험 신고
-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(위장 취업)하여 지원금 신청

2.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.제출

- ① 매출액, 재고량, 생산량 등을 기록한 서류의 변조 및 거짓 제출
- ② 휴업, 근로시간단축, 훈련 등의 실시,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등의 거짓 신고
- ③ 출.퇴근부, 훈련실시현황의 거짓 작성 및 신고
- ④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
- ⑤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
- ⑥ 훈련비 등 비용정산서류의 위조 및 거짓 작성

3.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예)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

위와 같이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사업장명 : _____ (인)